

국·공유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사유지나 국·공유지라고 자료에 나타난 바로 본다면 알 수가 있는데…….

○住宅局長 邊榮進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돼서 委員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것이고, 제가 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洪淳喆委員 그러면 사유지가 됐든 국·공유지가 됐든 유허가가 49, 무허가가 141이예요, 유허가가 허가낼 수 있습니까?

○住宅局長 邊榮進 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유지의 오타로써 판명이 됐습니다.

○洪淳喆委員 그러면 49 유허가를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住宅局長 邊榮進 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泚柱 局長, 검토보고자료에 의하면 사유지가 2만 5,663㎡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의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住宅局長 邊榮進 네, 그런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착오를 사과드립니다.

○委員長 金泚柱 洪淳喆委員님, 이해되셨습니까?

○洪淳喆委員 네, 그래서 자료를 부탁했습니

다.

○委員長 金泚柱 그러면 다른 발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지금까지 심사를 한바, 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 照)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

의안 번호	731
----------	-----

제출년월일: 1997. 3. 7.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1. 건명: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1종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변경결정
2. 제안이유: 마아2주거환경개선지구내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북한산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요지(입안내용)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입안내용

위 치	용도지역 변경		면 적(㎡)	비 고
	당 초	변 경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	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16,100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 입안내용

구 분	지구명	위 치	변경내용(㎡)		비 고
			당 초	변 경	
풍치지구	수유지구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	1,440,041	1,423,941 (감16,100)	

4. 참고사항

○도시계획사항: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현황: 본 지역은 '92.5.21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지구내에는 소규모 필지로 개별 건축이 불가한 노후된 단독주택들로 밀집되어 안전이 우려되며 인근 수유제1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수유3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풍치지구가 해제되었으며 동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과 병행하여

<p>변경되므로 도시경관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p>	<p>가를 받을 때 봉천 제2-2구역 재개발조합측에서 관악로 확장공사 구간중 봉천2동 7-52번지에서 7-473구간의 도로확장을 폭은 20m에서 40m로 하고 확장구간은 304m에 이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5,500만원이며 또한 봉천 제2-2구역 재개발조합측에서 아파트 단지내 산복도로를 신설하는데 도로폭은 20m 신설도로로 길이는 244m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7,800만원으로 조합원들이 관악로 및 산복도로 개설에 따른 건설비용을 총 87억 3,300만원을 주민부담으로 건설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사업시행인가시에 관할 區廳長의 황포로 조건을 달아놓은 청원입니다.</p>
<p>2. 住宅局所管請願의件(3件) (11時 08分)</p>	<p>내용에 있어서는 서울特別市 道路管理指針(관제22420-683(88.3.31))호에 의하면 도로 소유구분은 폭 20m 이상은 서울特別市長이 폭 20m 이하는 自治區 소유로 이관되었으며, 都市再開發法 제57조제2항 및 同施行令 제48조에 의거 폭 20m 이상인 관악로 확장공사는 서울特別市長이 도로개설비를 부담하고 폭 20m 이하 도로인 산복도로 신설은 冠岳區廳長이 개설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주민부담금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건부로 인가하여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켜 1999년 8월 30일자로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은 전체 현재 조합원 중에서도 50%도 저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委員長 金泚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住宅局所管請願의件을 상정합니다.</p>	<p>더구나 신설도로인 산복도로는 관악로 봉천고개 정점을 시점으로 하여 봉천 제2-2구역, 봉천 제3구역 봉천 제4-2구역과 연속 접속되는 신설도로이며, 아파트 건립후 주택 증가에 따른 불특정 다수를 위한 도시시설 용량개선을 위한 신설도로 개설비용을 조합측에 부담시키고 사업종료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요구는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의 근본목적에 배치되고 또한 현행법상 위배된다는 점입니다.</p>
<p>(議事棒 3打)</p>	<p>또한 내용 네번째는 관악로 확장공사는 91년도부터 시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94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봉천 제2-2구역 재개발조합측에 일부 구간의 공사비를 부담시켜 관악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전후가 뒤바뀐 행정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현 조합원이 1,000여명의 조합원 중에서 총액 87억원을 부담시키게 되면 한</p>
<p>오늘 심사하게 될 청원은 총 3건으로 지난 2월 21일 제92회 臨時會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2건과 신규로 접수된 1건입니다.</p>	<p>내용에 있어서는 서울特別市 道路管理指針(관제22420-683(88.3.31))호에 의하면 도로 소유구분은 폭 20m 이상은 서울特別市長이 폭 20m 이하는 自治區 소유로 이관되었으며, 都市再開發法 제57조제2항 및 同施行令 제48조에 의거 폭 20m 이상인 관악로 확장공사는 서울特別市長이 도로개설비를 부담하고 폭 20m 이하 도로인 산복도로 신설은 冠岳區廳長이 개설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주민부담금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건부로 인가하여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켜 1999년 8월 30일자로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은 전체 현재 조합원 중에서도 50%도 저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보류된 2건에 대해서는 이미 紹介議員의 취지설명과 專門委員의 검토보고, 소관 局長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신규로 접수된 접수번호 54번, 奉天洞 2-2 재개발조합의 관악로·산복도로 건설개선과 사유지 매입신청에 관한 청원건으로 紹介議員의 취지 설명과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局長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p>	<p>내용에 있어서는 서울特別市 道路管理指針(관제22420-683(88.3.31))호에 의하면 도로 소유구분은 폭 20m 이상은 서울特別市長이 폭 20m 이하는 自治區 소유로 이관되었으며, 都市再開發法 제57조제2항 및 同施行令 제48조에 의거 폭 20m 이상인 관악로 확장공사는 서울特別市長이 도로개설비를 부담하고 폭 20m 이하 도로인 산복도로 신설은 冠岳區廳長이 개설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주민부담금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건부로 인가하여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켜 1999년 8월 30일자로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은 전체 현재 조합원 중에서도 50%도 저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96년 12월에 접수됐습니다만, 紹介議員의 사정상 오늘 소개드림을 말씀드립니다.</p>	<p>더구나 신설도로인 산복도로는 관악로 봉천고개 정점을 시점으로 하여 봉천 제2-2구역, 봉천 제3구역 봉천 제4-2구역과 연속 접속되는 신설도로이며, 아파트 건립후 주택 증가에 따른 불특정 다수를 위한 도시시설 용량개선을 위한 신설도로 개설비용을 조합측에 부담시키고 사업종료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요구는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의 근본목적에 배치되고 또한 현행법상 위배된다는 점입니다.</p>
<p>접수번호 54번, 봉천 2-2 재개발조합의 관악로·산복도로 건설개선과 사유지 매입신청에 관한 청원건을 소개하신 金洙福議員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또한 내용 네번째는 관악로 확장공사는 91년도부터 시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94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봉천 제2-2구역 재개발조합측에 일부 구간의 공사비를 부담시켜 관악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전후가 뒤바뀐 행정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현 조합원이 1,000여명의 조합원 중에서 총액 87억원을 부담시키게 되면 한</p>
<p>○金洙福議員 冠岳區 제2선거구 출신 金洙福議員입니다.</p>	<p>또한 내용 네번째는 관악로 확장공사는 91년도부터 시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94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봉천 제2-2구역 재개발조합측에 일부 구간의 공사비를 부담시켜 관악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전후가 뒤바뀐 행정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현 조합원이 1,000여명의 조합원 중에서 총액 87억원을 부담시키게 되면 한</p>
<p>평소 존경하는 金泚柱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들 앞에서 本議員이 청원내용을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p>	<p>또한 내용 네번째는 관악로 확장공사는 91년도부터 시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94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봉천 제2-2구역 재개발조합측에 일부 구간의 공사비를 부담시켜 관악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전후가 뒤바뀐 행정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현 조합원이 1,000여명의 조합원 중에서 총액 87억원을 부담시키게 되면 한</p>
<p>첫째, 봉천 2-2구역 재개발 지역은 1965년도 楊坪洞 수재민의 집단이주지역으로 1973년 구역지정(건설부고시 제470호)후 20여 년만에 재개발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99년 8월 30일 입주를 목표로 재개발사업이 어렵게 추진중에 있으나</p>	<p>또한 내용 네번째는 관악로 확장공사는 91년도부터 시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94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봉천 제2-2구역 재개발조합측에 일부 구간의 공사비를 부담시켜 관악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전후가 뒤바뀐 행정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현 조합원이 1,000여명의 조합원 중에서 총액 87억원을 부담시키게 되면 한</p>
<p>둘째, 당초 冠岳區廳으로부터 94년 2월 24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설립 및 사업시행인</p>	<p>또한 내용 네번째는 관악로 확장공사는 91년도부터 시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94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봉천 제2-2구역 재개발조합측에 일부 구간의 공사비를 부담시켜 관악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전후가 뒤바뀐 행정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현 조합원이 1,000여명의 조합원 중에서 총액 87억원을 부담시키게 되면 한</p>